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5회 KAIA EDU

— 국토교통R&D 기술료 제도 안내 —



2022.7.27



CONTENTS | 목차



I 기술료 제도 개요

II 연구개발성과의 소유·활용

III 기술료 관리

IV 관련자료 및 문의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하고, 연구개발 재투자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 연구개발성과 →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 재투자 및 연구원 보상

 정의 기술료 ≠ 정부납부기술료

- **기술료**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정부납부기술료**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

정의

▶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것
- 연구개발 성과유형 :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제품, 표준 등 유형·무형의 성과

▶ 연구개발성과 실시 및 실시유형

- 연구개발성과 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실시유형 : ① 직접실시, ② 제3자실시

직접실시 (소유기관=실시기관)	제3자실시(소유기관≠실시기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실시하여 수익(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자(제3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의

▶ 기술료 유형 : ① 정액기술료, ② 경상기술료

기술료 유형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기술개발에 따른 매출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내는 경우		기술개발에 따른 매출과 연계하여 기술료를 내는 경우	
세부유형	출연정률	지정	착수 기본료	매출정률
	제품의 판매 등에 관계 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을 고정금액으로 지불	제품의 판매 등에 관계 없이 계약된 고정금액으로 지불	매출 발생 이전,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는 금액	착수기본료 납부 이후 매출에 비례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불

출처(과기부,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과 입력매뉴얼, p.390)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정의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으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공기업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 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시행령 제32조)

연구자

연구개발기관
(소유)

연구개발기관유형	연구개발성과소유
주관	○
공동	○
위탁	×(주관소유)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의 일부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인 사유로 다른 기관에 맡겨 수행하는 연구이기 때문

01

단독소유

-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소유

02

공동소유

-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함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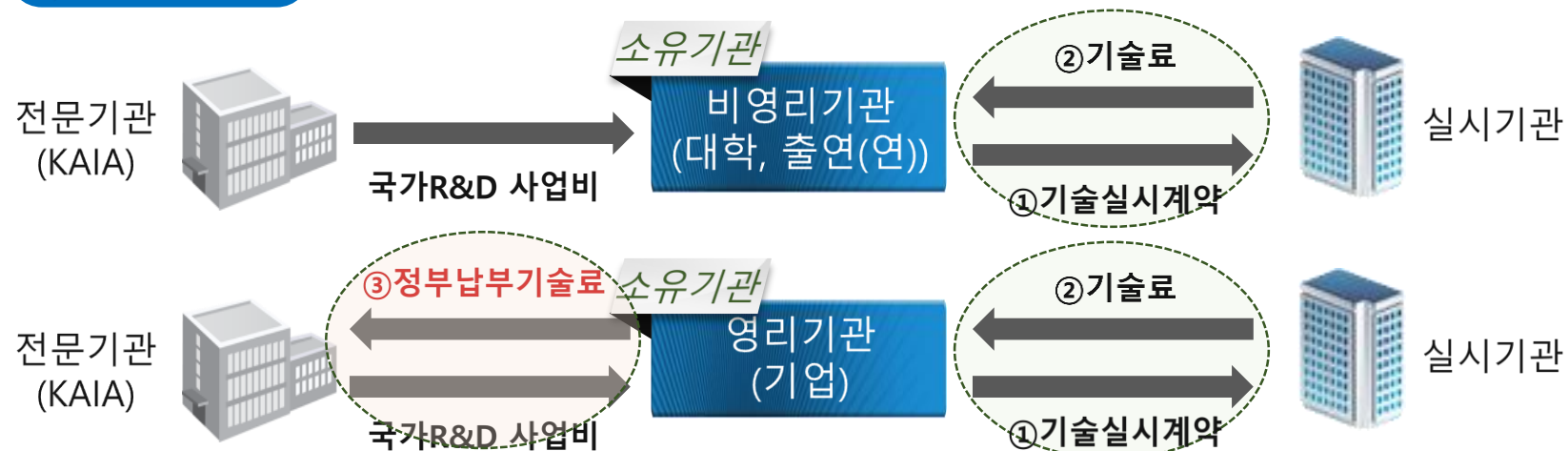
국가소유

- 국가안보, 공익 등을 위해 국가소유로 하는 내용 포함하여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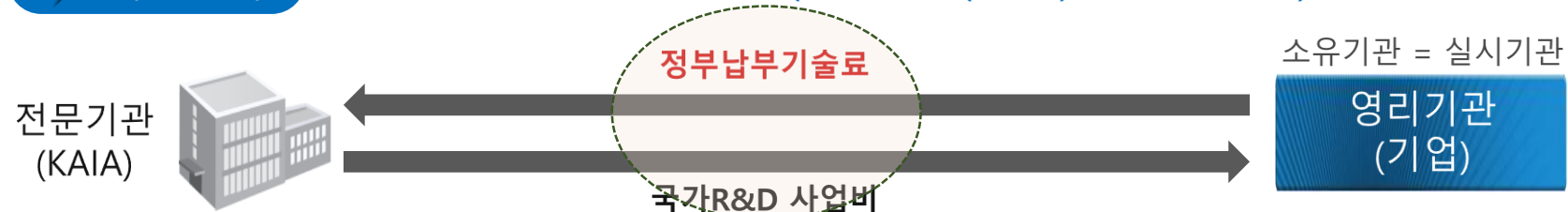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원활한 성과활용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직접실시와 기술실시계약(제3자실시) 등 조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시행령 제34조)

01 제3자실시 기술실시계약 체결 (소유기관 ↔ 실시기관)



02 직접실시 기술실시결과보고서 제출 (전문기관(KAIA) ← 소유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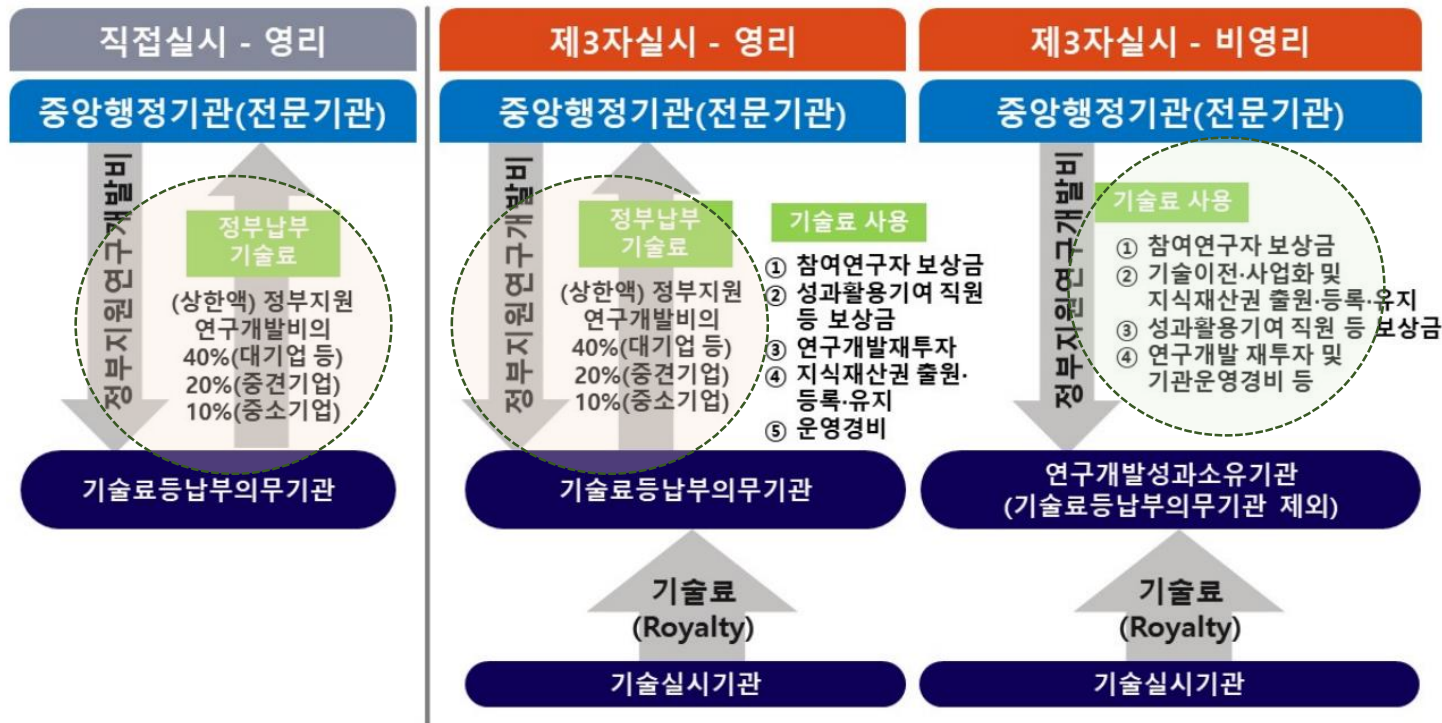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유형별 기술료 관리

▶ 비영리기관(제3자실시) : 계약,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의무 존재

- 사용비율 : 정부지분기술료의 ① 50%, ② 15%, ③ 10%, ④ 나머지 금액

▶ 영리기관(직접실시&제3자실시)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 존재

- 납부 상한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등 40%



비영리기관 기술료 관리

01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보고

- **(기술실시계약 체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 체결
 - (계약조건 상호협의를) 실시권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납부방법
 - * (기술료 감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활용 인정하거나, 협약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정함)
- **(전문기관 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서식19] 기술실시계약보고서' 제출

02

기술료 징수 및 보고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
- **(전문기관 보고) 징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서식20]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제출

03

기술료 사용 결과보고

- **(기술료 사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
- **(전문기관 보고) 다음년도 2월까지** [서식24]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외) 제출

영리기관 기술료 관리

01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보고

- **(기술실시계약 체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 체결
 - (계약조건 상호협의를) 실시권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납부방법
 - * (기술료 감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활용 인정하거나, 협약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정함)
- **(전문기관 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서식19] 기술실시계약보고서' 제출

02

기술료 징수 및 보고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
- **(전문기관 보고) 징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서식20]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제출

03

기술료 사용 결과보고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납부대상 기간)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기술료 사용)** 정부납부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용도 및 사용
- **(전문기관 보고) 다음년도 2월까지** [서식24]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제출

01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보고

서식19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 NTIS 세부과제번호									
	연구과제명	* 세부과제명									
	주최연구개발 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비합계	'00.00.00		출 연구비		'00.00.00 - '00.00.00					
	영수증합계	'00.00.00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국외소재 소유기관	영부지점명	연구개발기관 부지점명		지배자(영부지 점명)		기타 지점명		계			
	영부지점명	연구개발기관 부지점명		지배자(영부지 점명)		기타 지점명		계			
	영부지점명	연구개발기관 부지점명		지배자(영부지 점명)		기타 지점명		계			
	영부지점명	연구개발기관 부지점명		지배자(영부지 점명)		기타 지점명		계			
	영부지점명	연구개발기관 부지점명		지배자(영부지 점명)		기타 지점명		계			
	영부지점명	연구개발기관 부지점명		지배자(영부지 점명)		기타 지점명		계			
기술료 유예여부	기술료	Y ☐		H ☐		대상이자					
	기술료	Y ☐		H ☐		대상이자					
	기술료	Y ☐		H ☐		대상이자					
	기술료	Y ☐		H ☐		대상이자					
	기술료	Y ☐		H ☐		대상이자					
	기술료	Y ☐		H ☐		대상이자					
(제3자)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계약발의	계약/결정(총합(연구+결정))		계약발의 일시							
	실시계약명	실시 계약		'00.00.00		'00.00.00 - '00.00.00					
	지정된 종류	실시된 종류		기술료/연구개발비/기술료							
	실시방법	* 연구개발(연구, 개발) 등 계약 특이사항 기재									
	연구개발비 인 경우	* 1년 이상일 경우를 추가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주 소	주 소		주 소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주세(도입자)	주세(도입자)		주세(도입자)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주 소	주 소		주 소							
제3자 실시기관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주세(도입자)	주세(도입자)		주세(도입자)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주 소	주 소		주 소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주세(도입자)	주세(도입자)		주세(도입자)							
(제3자) 기술료 징수계획(합) * VAT제외금액 기분 작성	기술료 징수계획	기술료 징수계획		기술료 징수계획							
	주 소	주 소		주 소							
	1 차	'00.00.00		1 차		'00.00.00					
	2 차	'00.00.00		2 차		'00.00.00					
	3 차	'00.00.00		3 차		'00.00.00					
	4 차	'00.00.00		4 차		'00.00.00					
5 차	'00.00.00		5 차		'00.00.00						
계			계								

정부납부기술료 세부현황 (소유기관이 기입된 경우만 작성)	정부납부기술료 잔액(제3자실시) A. 정부납부기술료 잔액 : 영부지점연구개발비 * (표소기업 10%, 표견기업 20%, 대기업·중기업 40%)							
기술실시계약 세부사항 및 결정금액 (소유기관이 기입된 경우만 작성)	1차 기술료 징수명	연구개발과제 코드명						
	구분	1명차	2명차	3명차	4명차	5명차	6명차	7명차
	징수금액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매출 납부대금(A)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실 결산금액(B)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결정금액(A-B)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방식	실시연구개발비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표소기업 5%, 표견기업 10%, 대기업·중기업 20%)							
결정금액 (소유기관이 기입된 경우만 작성)	결정금액 결정 ☐	사회결정액 결정 ☐	국기관보 결정 ☐	확정금액 ☐	기타고과 결정 ☐			
	명	명	명	명	명			

- (연구개발기관 소유기관 제3자실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표견결정기관의 참여에 기술도 징수 절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고서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미납액 축소신고, 어뷰징 등 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대상자를 증명할 경우 징수되지 또는 양액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명 명 명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대표자)

(명)

첨부서류 : 기술실시계약서 및 실시기관 사업자등록증 등 표견 서류 기재

주요 작성내용

-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 과제, 연구비 정보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소유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보
- 기술실시계약현황 계약정보
- 기술료 징수계획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기술료(VAT제외) 징수계획
- 정부납부기술료 세부현황 영리기관인 경우 작성
- 첨부서류 기술실시계약서, 실시기관 사업자등록증

02

기술료 징수 및 보고

서식20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R-NTIS 세부과제번호	
	연구과제명	R-세부과제명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협약일	100.00.00		연구기간		100.00.00 - 100.00.00						
연구개발비	장안확정일	100.00.00										
	연구개발비	장부지출금	연구개발비금	지출자치단체 지출금	기타 지출금	계						
	기관명	기관명				연구책임자						
	장부지출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소유지분율	장부지출금											
	표준계약	표준계약				대기업등기업						
						기타						
	표준계약(정부지출금의 10% 미만), 표준계약(정부지출금 20% 미만), 대기업등기업(정부지출금 40% 미만)											
(제3자)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계약방식	계약/결산		계약금액		원						
	실시계약일	100.00.00		실시기간		100.00.00 - 100.00.00						
	지체권 종류			실시권 종류		기술양도/전용실시/통상실시						
	실시방법	R-정부발의/일시, 통상실시, 계약종이사항 기재										
	특허/출원/등록인 명	명	R-1명 이상일 경우 총 추가									
	번호			명		자						
	기관명			기관명								
	주 소			대 표 자								
	제3자 실시기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주소(발달지)			e-mail								
징수 기술료 현황	징수일시	100.00.00		징수회차								
	징수금액											
예상 납부대상액 (A)	원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등기업 20%)											
입금금액 (B)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금액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금액	
예상 입금금액 (A-B)	원											
R-입금금액은 상환액 범위 내 입력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과제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 입금확인 결과문, 표명, 서주, 입												

* 계약방식

- (정액) 정액기술료
- (경상) 경상기술료(착수기본료, 매출정률)

* 실시권 유형

- (기술양도) 기술 매매, 증여 등의 권리를 완전히 이전
- (전용실시) 특허권자 이외의 자(제2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내용, 지역,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통상실시)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계약에 의하여 법률이나 행정 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예상 납부대상액(정부납부기술료)

- 징수한 기술료의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등 20%

주요 작성내용

-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 과제, 연구비 정보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소유기관 정보
- 기술실시계약현황 계약정보(계약방식, 실시권 유형)
- 징수 기술료 현황 징수 기술료(VAT제외) 일시, 금액
- 정부납부기술료 예상납부액 영리기업인 경우 작성
- 첨부서류 기술료 입금확인 결과문

03

기술료 사용 보고

기술료 관리 : 제3자 실시

서식24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기술료통납부의무기관 외)

(단위 : 원)

[illegible]

※ 염주개 발생확소류기장(기술도 및 납부의류기장 외)

- [illegible]

국문국문부 소관 국문국문부기술개발사업 기술문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21 22 23

(대표자)

(b)

정부지부 : 장미원주인 및 설과 할머니 기머만 국민 뵈며 대만 보상을 위한 내부 규원 및 지급 관련 협의 지부 인체

기술요 사용실적 보고서 (기술요동남부의무기관)

(단위 : 원)

연구개발직접 비용	사업비											(단위 : 원)
	내역사건별									연구개입차별번호	* NTR 세무과(원)본	
	연구차별명	* 세무과작성										
	구분연구개입기간			연구책임자				제품연구개입기간				
	연구협약금	'00.00.00				출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영산확정금	'00.00.00										
	연구개입일	연구지침금		연구개입기부금		지불자시도제 지침금		기타 지침금		계		
연구개발직접 소유기술 * 유한회사이용 이필요함 * 영산확정서	실사용 연구지침금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	계				
연구지침연구개입비 비율											%	
(제3자) 기술실시기각 현상	실시기각일											
	계약금액	영매/외상		계약금액		합						
	실시기각금	'00.00.00		실시기각		'00.00.00 - '00.00.00						
	지침변동률			실시기각 비율		기술실용성/전문성/시장성						
	실시기각비율											
	특이(돌발, 문제)인 경우	업 이										
	제3자 실시기각	원 인			업 자							
		기침금			기침금							
		주 소			내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처(담당자)				e-mail								
장수 기술도 현상 * VAI적응도 기준 적용	구 분	장수금액		연구지침기술도		사용금액		잔 액				
	지년별로 장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소 계											
	모집년도로 장수											
	구 분		사 용 금 액									

주요 작성내용

-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 과제, 연구비 정보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소유기관 정보
- **기술실시계약현황** 계약정보
- **징수 기술료 현황** 징수 기술료(VAT제외) 일시, 금액
-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비영리인 경우 용도별 사용비율 기준 준수, 영리인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첨부서류** 비영리인 경우 보상금 관련 내부규정 및 지급 증빙

영리기관 기술료 관리

01

기술실시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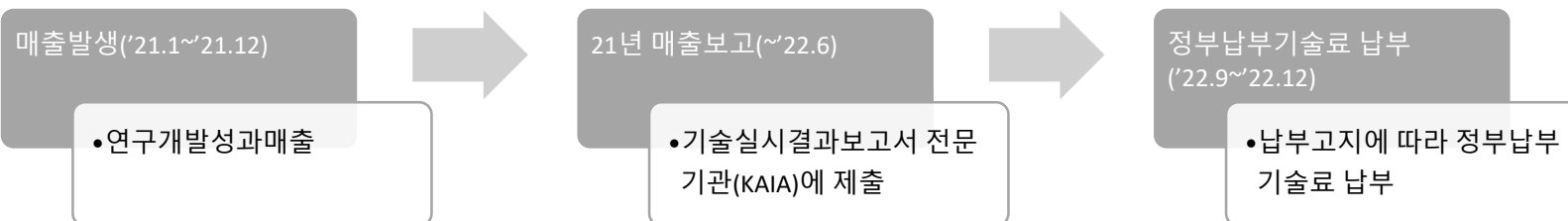
- **(기술실시결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매출)이 발생
- **(전문기관 보고)** 수익발생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서식2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제출

02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매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납부대상 기간) 수익(매출)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21년 매출발생시(납부대상 기간 : '22년~'26년, 5년)



 정부납부기술료 세부기준

분류		부과기준		기술료율	기술료 납부 상한
제3자 실시	중소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서식2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기술료통납부의무기관)

(단위 : 원)

연구개발사업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사업명: NTIS 세부과제명									
	연구자명	* 세부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자		출발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00.00.00 ~ '00.00.00		출발연구기간		'00.00.00 ~ '00.00.00					
연구개발 영향평가	영향평가명	'00.00.00									
	영향평가명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필자당계 지정금	기타 지정금	계					
	기장명	기장부담		연구개발자							
	기장명	기장부담		연구개발자							
연구개발 소유기관 소유기관명	소유기관명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5차명, ... 계									
	소유기관명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5차명, ... 계									
	소유기관명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5차명, ... 계									
	소유기관명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5차명, ... 계									
	소유기관명	1차명, 2차명, 3차명, 4차명, 5차명, ... 계									
기술실시 현황	기술실시 유형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기술실시 유형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기술실시 유형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기술실시 유형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기술실시 유형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연구개발 소유기관 직접 실시	기술기여도	주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기술기여도	주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기술기여도	주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기술기여도	주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기술기여도	주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기술실시 결과	기술실시 결과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기술실시 결과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기술실시 결과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기술실시 결과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기술실시 결과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기술실시 결과	기술실시 결과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기술실시 결과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기술실시 결과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기술실시 결과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기술실시 결과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직접 실시 □									

1. 기술료통납부의무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실행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8일 50일까지 매출액 장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고서 미제출, 연구개발사업의 미납, 미출액, 출소금, 어휘보고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장원, 부정행위자 장원일 시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1호, 제2호에 따라 제재처분결과를 고지 할수있고 또는 장외제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 소유기관 (대표자) (인)

첨부서류 : R&D성과 세부사양 및 재무제표 등 매출액(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접 실시	□	당기 회계기간	'00.01.01 ~ '00.12.31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R&D성과 매출액 × 기술기여도 × 비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① R&D성과 수익금액	원				
		② 최종 기술기여도 (④×⑤)	③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			%	
		※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중 ② 최종 기술 기여도와 일치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총사업비 (총사업비 = 해당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			%	
			④ 매출액 기여율			%	
		※ 매출액 기여율 = 정부R&D(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매출액 / 재무제표 매출액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 매출액(④가 100%미만일 경우 근거 제출(필수))					
		③ 요율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④ 기술료 비율(②×③)	%						
①×④ 최종 납부대상액	원						

주요 작성내용

-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 과제, 연구비 정보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소유기관 정보
- R&D성과 수익 당기 회계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세금계산서 기준)
- 기술기여도 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 ② 매출액기여율
- 요율 및 예상납부대상액 기업규모별 요율을 적용한 정부납부기술료 예상금액
- 첨부서류 R&D성과 세부사양 및 재무제표 등 매출액(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별첨3]

* 해당연도 기술실시 실적이 없는 경우 별지 21호 별첨3 제출

연구개발성과 미 실시 확인서(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사업명			
최상위과제명	* 연구과 또는 사업과 과제명 작성, 일반출연의 경우 세부과제명과 동일		
세부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 NTIS 세부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출연기간	참여기업명		
출연개발비(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술실시 대상과제명			
* 과학기술혁신사업			
대상과제 출연개발비(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대상과제 출연기간	대상과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휴대폰)	e-mail	
구성 및 인원			
최종년도	최종년도		
자본금(천원)	매출액(천원)		
주생산품목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통해 확보한 기술			
연구개발성과 미 실시 사유	연구개발성과 직접 실시 ()		연구개발성과 제3자 실시 ()
	* 해당 미발생 사유 해당 시 o 시장요인 o 기술적 요인 o 기타요인 (시장·기술적 기타 요인 등으로 상세히 기입 요망/ 필요시 첨부서류 제출 가능)		* 기술실시(제3자)가 어려운 사유 상세 히 기입 요망(필요시 첨부서류 제출 가능)
합계	* 미발생 사유 등을 고려하여 상세히 기입 요망		
연구개발성과 상충할 관련 추진계획			

기술실시 실적 보고서 미작성, 영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추산성고, 허위보고 등 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된
사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 제42조에서 정한 각각 제42조제1항을 통해 영부납부 또는 모든 장의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별첨 3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장)

(대표자)

(인)

첨부서류 : 표본서류 기재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납부대상 기간* 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실적이 없는 경우 미 실시 확인서 제출

* (납부대상 기간)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 작성내용

-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 과제, 연구비 정보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소유기관 정보
- 연구개발성과 미 실시 사유 당기 회계기간 동안 연구개발성과 직접실시/
제3자실시가 없는 경우로서 그 사유를 작성

기술료 규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의2(기술료 관리 등)
-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촉진), 제47조(기술실시계약), 제48조(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제49조(기술료의 징수), 제50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기술료 자료

홈페이지(www.kaia.re.kr) > 사업 > 국토교통R&D > 규정·서식·매뉴얼
 홈페이지(www.kaia.re.kr) > 참여 > FAQ or Q&A

기술료 문의

성과확산실 이유정 연구원
 031-389-6353 / eujung@kaia.re.kr

질의1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액기술료로 납부가 가능한지?

→ '21년 1월부터 혁신법 시행에 따라 경상기술료 즉, (제3자 실시) 징수한 기술료 또는 (직접 실시) 발생한 수익(매출액)의 일부로만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2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면제가 가능한지?

→ 혁신법에서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공기업·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이에 해당

혁신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질의3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감면이 가능한가요?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혁신법 제1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질의4 기술실시계약 체결 또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혜택은 무엇인가?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한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의5

연구개발성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공동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A)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산정기준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납부한도가 각각 존재합니다. 따라서, A의 직접실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정부납부기술료 세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질의6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5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 시까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